

돼지콜레라 살처분 보상금 제외, 원상 회복하라

결론부터 얘기해서 정부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돼지콜레라 살처분 보상금은 빠른 시일내에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

정부는 8월 1일, 지난 83년도부터 전염병 박멸을 위해 시행하여 온 우결핵, 소부루세라병, 돼지콜레라에 대한 「살처분 등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정, 돼지콜레라를 살처분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돼지콜레라를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돼지콜레라는 적기 백신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돼지콜레라 살처분 보상금을 오제스키병 등 긴급하고 자율방역이 곤란한 외래성 가축질병 방역에 우선 사용하고 ▲현재 발생두수의 대부분이 예방접종 미실시 및 자돈구입시 백신접종 미확인 입식농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살처분 보상금 지급 제외로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자율방역을 철저히 시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살처분 등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기 전에 돼지질병방역대책협의회를 개최, 각계의 의견을 듣고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많은 양돈농가들은 「살처분 등 보상금 지급기준」개정 경위야 어떻든 돼지콜레라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고, 또 이번 조치로 정부가 돼지콜레라 박멸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사실 최근의 돼지콜레라 발생 추세를 보더라도 지금은 정부가 돼지콜레라를 살처분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때가 아니라, 보상정책을 더 강화하고 정부예산을 집중 투입, 박멸정책을 펼 때라고 본다. 정부가 돼지콜레라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불과 이틀 지난후 전국에 「돼지콜레라 발생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돼지콜레라가 점차 없어지는 질병이 아니라,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질병임을 정부 스스로 발생주의보 발령을 통해 확인시켜 준 것이 아니겠는가?

돼지콜레라는 돼지 질병중 가장 무섭고 전염력이 강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양돈업계의 관심의 초점이 된 돼지오제스키병의 성가(?)에 눌려 그동안 소홀히 취급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양돈인들이



“돼지콜레라가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을 감안할때 정부는 지금 돼지콜레라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제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상정책을 더 강화하고 정부 예산을 집중 투입, 본격적인 박멸정책을 펼때이다.”

돼지오제스키병에 온통 정신을 빼앗기고 있을때 돼지콜레라는 그 틈을 이용,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결과는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가 뒷받침해 주고 있다.

〈표1〉 연도별 돼지콜레라 발생 현황 (단위: 두)

연도	'85	'86	'87	'88	'89 (1~6월)	비고
건 수	33	34	68	90	63	
두 수	1,438 (100%)	2,018 (140%)	4,644 (322%)	8,304 (577%)	6,867 (477%)	

〈표2〉 연도별 돼지콜레라 살처분 보상금 지급 현황 (단위: 두, 천원)

연도	'85	'86	'87	'88	'89 (1~6월)	비고
두 수	419	1,146	2,071	5,030	3,888	
금 액	13,544 (100%)	42,080 (211%)	75,179 (555%)	236,489 (1,746%)	127,454 (941%)	

'85년 1,438두, '86년 2,018두 발생했던 돼지콜레라는 국내에 돼지오제스키병이 처음 발생한 '87년부터 부쩍 늘기 시작해 '87년 4,644두, '88년 8,304두 발생했고,

금년 들어서도 벌써 6월까지 6,867두가 발생해 '85년에 비해 500~800%가 더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돼지콜레라로 인해 지급한 살처분 보상금액도 '85년의 1천3백만원에서 '86년 4천2백만원, '87년 7천5백만원, '88년 2억3천6백만원이었고, 금년 들어서는 6월까지 1억2천7백만원이 지급돼 해를 거듭할 수록 지급액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돼지콜레라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중지한다는 것은 곧 돼지콜레라 박멸 포기나 다름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돼지콜레라가 전국적으로 대량으로 발생하지 않은 것은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양돈농가들이 돼지콜레라 발생시 즉시 이를 관계당국에 신고, 돼지 이동제한, 역학조사, 살처분 매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할 때 어느 양축가가 돈콜레라 발생 사실을 솔선해서 관계당국에 자진 신고하겠는가?. 또 발생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때 관계당국에서는 어떻게 이를 빨리 인지해서 필요한 방역대책을 취할 수 있겠는가?

이외에도 살처분 보상금을 폐지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백신접종을 해도 100%는 예방이 안

“100두규모 이하가 전체 양돈농가의 90% 이상인 점을 감안할때 이번 정부의 돼지콜레라 살처분 보상금 지급 제외 결정은 결국 중소규모 양돈농가가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 틀림없다”

되므로 백신을 접종한 농장이라도 발병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83년의 돈콜레라 파동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둘째, 아직도 100두규모 이하의 영세 양돈장이 전체 양돈농가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를 폐지할 경우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돈콜레라가 만연될 우려가 크다. 셋째, 닭의 뉴캐슬병과 돈단독 등도 현재 자율적인 방역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승을 부리고 농가의 피해가 커 보상금제도를 채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넷째, 돼지콜레라는 법정전염병이므로 농장에서 돼지콜레라 발병시 당국에서 살처분 명령을 내릴때 양돈농가들이 조기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대규모 농장들은 관리수의사가 있어 백신프로그램에 따라 적기에 백신을 하겠지만, 중소규모 양돈장은 아직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볼때 결국 피해는 중소규모 농장이 보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상 살처분 보상금 폐지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 보았지만, 미국의 경우는 '70년대에 돼지콜레라를 박멸하기 위해 국가에서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수억달러의 국가예산을 책정, 백신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강력한 살처분 보상 정책을 추진, 결국 돼지콜레라를 박멸한 의지를 우리 정부 관계자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단순히 살처분 보상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를 폐지한다면 돈콜레라의 박멸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또 돼지콜레라 살처분 보상금제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를 안다면 이를 그렇게 쉽게 폐지하지 못할 것이다.

83년 돼지콜레라 파동당시, 국가기관에서 제공한 백

신을 주사한 양돈장의 돼지들이 돼지콜레라에 집단으로 감염됨으로써 피해가 극심, 본회가 정부에 강력히 건의, 돈콜레라 살처분 보상금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당시 돈콜레라 파동으로 관계고위공무원이 문책을 당한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때 「뜨물백신」이라는 말도 나돌았듯이 백신이라고 100% 믿을 수 있는 것은 못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지금은 당시보다 기술 수준이 많이 나아졌겠지만, 만의 하나 백신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가 일어났을때 누가 피해를 입겠는가? 이와같이 어렵게 마련된 제도를 예산부족으로 없앤다면 보다 큰 것을 잃게 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백신을 적기에 구입해서, 올바른 프로그램에 따라 올바르게 접종을 하지 못하는 많은 양돈농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기술지도와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생산자단체인 협회의 의견과 자연인의 의견비중을 동일시 해서 보상금 지급을 폐지키로 한 것도 올바른 여론 수렴이라고 말하기 곤란하다. 또한 정부가 7월 11일 개최한 「돼지질병방역대책협의회」에서 돈콜레라는 백신만 철저하면 예방이 가능하므로 보상금 지급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아직 영세규모 양돈장이 많은 우리나라 여건에서 보상금 지급 폐지는 시기상조이고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양론이 있어 농림수산부에서도 이 문제는 더 검토키로 해 놓고 일방적으로 폐지키로 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살처분 보상금과 같이 많은 양돈농가의 이해가 걸리고 양돈산업의 발전과 관계된 중요 문제는 사전에 생산자단체인 협회와 충분히 협의한후 결정해야 옳다.

따라서 절대다수 양돈농가들에게 피해를 주고 양돈산업 발전에도 역기능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한 살처분 보상금 지급 제외 결정은 마땅히, 빠른 시일내에 원상 회복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예산상 정 어렵다면 최소한 일정규모 이하, 예를들면 양돈업 등록업체 이하 규모의 양돈농가에 한해서라도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

〈글: 김 동 성〉